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백종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132 발의연월일: 2024. 8. 23.

발 의 자: 백종헌・서천호・박성훈

조경태 · 김예지 · 진종오

정성국 · 박정하 · 정희용

이헌승 · 김용태 · 김상욱

박준태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최근 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시장에서 식품 등 소비 수요와 판매 공급이 확대되고, 제품 표시·광고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공되어 온라인에서 게시된 제품 정보를 통한 구매가 일반화되고 있음.

특히 온라인을 통한 식품 등 부당한 표시·광고가 지속되어 국민 안전과 건강 위험 요인이 확대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영업자 중심의 오프라인 규제사항으로서 온라인 유통 중심으로의 정책환경 변화와 국민 안전 보장에 한계가 있어, 온 라인의 식품 등 부당 표시·광고에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민 안전,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등 부당한 표시·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행정조치 체계 확립을 위해,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·광고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,

방대한 온라인 시장의 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규제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온라인에서의 건전한 유통문 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식품등의 표시·광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, 위법 표시·광고의 내용만으로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할수 있도록 하며, 모니터링 결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법 표시·광고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제13조의2 신설).
- 나.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등의 표시·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위탁하고,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의3 신설).
- 다.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협회 또는 단체에게 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의4 신설).
- 라.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·광고 현황 조사,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 등의 연구·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의5

신설).

법률 제 호

식품 등의 표시 ·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식품등의 표시·광고 모니터링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(이하 이 조에서 "정보통신망"이라 한다)을 통한 식품등의 표시·광고가 제7조 및 제8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.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나 해당 표시·광고의 내용만으로는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」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) 또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」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(이하 이 조에서 "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제출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

이에 따라야 한다.

-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제7조 또는 제8조에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표시·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, 방법과 절차,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의3(식품등의 표시·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등) ①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모니터링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
 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3조의4(자율규제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협회 또는 단체(이하이 조에서 "협회등"이라 한다)는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 - 1. 「식품위생법」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
 - 2.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

- ② 협회등은 제7조 및 제8조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동강령 및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협회등이 수행하는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13조의5(식품등의 표시광고 연구·개발 지원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부당한 식품등의 표시·광고 관련 유통 현 황조사 및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·방법에 대한 연구·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연구·개발 지원의 절차·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25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 - 1.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(「형법」 제127조에 따른 벌칙 적용은 제외한다)
 - 2. 제13조의3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
- 제3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3.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

따르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3조의2(식품등의 표시·광고
	모니터링 등) ① 식품의약품안
	전처장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
	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
	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
	정보통신망(이하 이 조에서 "정
	보통신망"이라 한다)을 통한 식
	품등의 표시・광고가 제7조 및
	제8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
	모니터링할 수 있다
	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
	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제7조 또
	는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
	<u>나 해당 표시·광고의 내용만으로</u>
	는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
	수 없는 경우에는 「정보통신망
	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
	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
	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(「정보통
	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
	관한 법률」 제32조의5에 따라 지
	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) 또
	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
	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

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(이하 이 조에서 "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제7조 또는 제8조에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표시·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청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, 방법과 절차,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제13조의3(식품등의 표시·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등) ①

<신 설>

<신 설>

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의 모니터링 업무 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 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3조의4(자율규제)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협회 또는 단체 (이하 이 조에서 "협회등"이라한다)는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있다.
 - 1. 「식품위생법」 제64조제1항 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
 - 2.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
 - ② 협회등은 제7조 및 제8조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

<신 설>

제25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의 위원은 「형법」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행동강령 및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시행 하는 협회등이 수행하는 자율규 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 다.

제13조의5(식품등의 표시광고 연 구·개발 지원) 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부당한 식품등의 표시·광고 관 런 유통 현황조사 및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·방법에 대한 연 구·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연구·개발 지 원의 절차·방법 및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.

제25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「형법」 제12 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1.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위원 (「형법」 제127조에 따

제31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.

1.·2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②·③ (생 략)

른 벌칙 적용은 제외한다)

 2. 제13조의3에 따라 위탁받은

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

 단체의 임직원

제31조(과태료) ① -----

---.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
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